

광주지방법원 2021. 8. 10 선고 2020가단544254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광주지방법원 2022. 5. 13 선고 2021나64824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8. 10 선고 2020가단544254 판결

전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재천

피 고 B

변론종결 2021. 6. 29.

판결선고 2021. 8.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9/11 지분에 관하여 2019. 9.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9/11 지분에 관하여 2019. 9. 26.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169969호로 마친 각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8,664,727원 및 이에 대한 2011. 12.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형제지간으로 D와 C의 자녀들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당초 D의 소유였는데, D가 2011. 12. 20. 사망하자, 2012. 5. 22. 위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D의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인 E의 채권자인 F 주식회사의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2014. 5. 14. 위 부동산 중 9/11 지분에 관하여 C 명의로, 2/11 지분에 관하여 E 명의로 각 소유권경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그 후 C은 2019. 9. 26.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 중 C 명의인 위 9/11 지분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9/11 지분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9. 7. 1. 채권최고액 2,400만 원, 채무자 D로 한 G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11. 11. 15. 그 피담보채무액 2,000만 원의 모두 변제되면서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는데, 한편 원고는 2011. 11. 15. D 명의 계좌로 14,909,624원을 송금해 주었다.

마. 원고는 C에게, 2011. 9. 5. 330만 원을, 2012. 2. 17. 1,050,000원을 각 송금해 주었는데, 위 330만 원의 거래내역에는 ‘어머니방전세’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1,050,000원의 거래내역에는 특별한 기재사항이 없다.

바. 원고는 2011. 11. 11.경 H로부터 광주 동구 I 대 129㎡ 및 그 지상 주택을 매수하고 2011. 11. 28.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원고가 2011. 12. 19.경 J조합으로부터 7,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해 2011. 12. 14. 위 각 부동산과 원고 소유 6필지 토지 및 당시 D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2. 14. 채권최고액 9,600만 원, 채무자 원고로 한 J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그 중 위 6필지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은 2016. 12. 2. 말소되었다.

사. 이 사건 부동산 중 주택에 관하여 2011. 9.경부터 2011. 11.경까지 일부 보수공사가 시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가)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청구

원고는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 11. 15. 채무자를 D로 한 G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 말소될 당시 그 피담보채무인 D의 대출금채무 2,000만 원을 대위변제해 주었고, ② 또한 앞서 본 이 사건 부동산 중 주택의 보수공사에 따른 공사비 27,656,000원을 대위변제해 주었는바, D에 대하여 합계 47,656,000원(위 2,000만 원 + 위 27,656,000원)의 구상금채권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D는 2011. 12. 20. 사망하여 피고가 법정상속분에 따라 D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8,664,727원(위 47,656,000원 x 피고 상속지분 2/11)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원고는 C에 대하여, 앞서 본 D에 대한 구상금채권 중 C 상속분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 9. 5. 송금한 330만 원, 2012. 2. 17. 송금한 1,050,000원 합계 4,350,000원의 대여금채권도 갖고 있었다.

그런데 C은 2019. 9. 26. 피고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9/11 지분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위 증여계약은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써 피고는 C에게 위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① 원고 주장의 보수공사는, 이 사건 부동산의 앞집을 매수하여 이사 온 원고가 자신의 주택을 포함하여 2채를 한꺼번에 리모델링한 것으로 알고 있어 공사비를 인정할 수 없고, 더구나 이는 원고가 부모를 부양하는 차원에서 거주하는 주택을 보수해 준 것일 뿐 D의 공사대금을 대위변제하여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② 그 밖에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대위변제 등 다른 주장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알지 못하므로, 당사자 관계를 제외하고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부인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D 및 C의 관계, 원고가 D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한 시기 및 근저당권 말소 이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수공사가 이루어진 시기, 원고는 위 보수공사 무렵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과 인접한 주택 및 대지를 매수하였고, 위와 같이 매수한 주택의 보수공사를 함께 할 필요성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다는 돈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서만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보수공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약관계를 알 수도 없는 점, 원고는 J조합으로부터 상당액을 대출받으면서 자신 소유 부동산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도 담보로 제공하였고,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대출금 중 일부가 보수공사에 지출한 자금이나 C에게 송금한 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인 점, 원고가 C에게 직접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의 액수, 원고가 특별히 이 사건 소 제기 이전까지 C이나 피고를 비롯한 D의 상속인들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C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중 9/11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한 사실을 알고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앞서 든 증거자료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당초 D에 대하여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C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찬우

목록

1. 토지

광주광역시 동구 대 188㎡

2. 건물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명 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위 지상

시멘트블럭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59.89㎡

부속건물 시멘트블럭조 스테이지붕 단층 광 8.59㎡

시멘트블럭조 스테이지붕 단층 광 7.27㎡

